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 (경유)
 제목 부동산취득세 감면신청 처리

*****에 대한 부동산을 2015.12.3. 취득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3조 【감면신청 등】의 규정에 의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기에 관계법령과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감면결정 처리코자 합니다.

가. 지방세 감면신청 내역

법 인 명	*****		법인등록번호	*****			
주 소	***** **		등기등록의종류	과세대상물건			
물 건 지	***** *****		매 매	토지(㎡)	건물(㎡)		
				1658.9 외	10943 외		
세 목	과세표준	세율	산출세액	감면세액	신고세액	감면비율	
합 계			6,720,344,910	3,944,550,180	3,360,172,560		
취 득 세	146,094,461,226	4%	5,843,778,430	2,921,889,220	2,921,889,210	50%	
농 특 세	부과	146,094,461,226	0.2%	292,188,650	146,094,210	146,094,440	50%
	감면	2,921,889,220	20%	584,377,830	584,377,830	0	비과세
교 육 세	146,094,461,226	0.4%	584,377,830	292,188,920	292,188,910	50%	

나. 관계법령

(1) (구)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【취득세의 면제 등】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50%감면하고 「지방세법」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(2) (현) 조세특례제한법 부칙<법률 제12853호,2014.12.23.> 제72조(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)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·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 제4항 제3호(2014.12.23. 삭제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즉 취득세 50% 감면

